

2024년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공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이론 연구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리서치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8일
관세평가분류원장

1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3인 이내 팀구성 가능)**

※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참여 대상으로 하며 향후 수상자 결정 시 재학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공모 분야

-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를 위한 리서치

3 리서치 방법

- 문헌조사(Literature Research) 및 분석
 - 주요국(미국, 일본, EU 등) 웹 사이트 등 검색, 국내외 학술지·논문, 관련 기관·협회·학회·기업체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조사 및 분석, 시사점 도출
- ※ 해외자료(사례), 기업분석보고서, 회계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 활용가능 (출처명시)

4 리서치 주제

- [권고 주제] 다음 주제 중 하나를 선택

관
세
평
가
부
문

-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소송** 사례 수집 및 분석
- 산업별 **국제거래 상관행** 특성 분석 및 사례 수집
- 핵심 산업별 **키워드(KeyWord)**를 통한 이슈 분석
-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국경간 전자상거래(Cross Border E-Commerce)** 유형조사
- 인코텀즈(INCOTERMS)별 **과세가격 산정기준** 조사
- 권리사용료** 관련성과 거래조건에 따른 과세(비과세) **해외사례** 수집

1. 원유와 석탄의 가공단계별 생산품의 종류 및 상세설명(사진, 그림 포함)
2. 각종 기계에 사용되는 범용성 부품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한 조사(사진, 그림 포함)
3. 다양하게 활용되는 밸브(HS 제8481호) 및 베어링(HS 제8482호)에 대한 조사(사진, 그림 포함)
4. 평직물, 능직물 등과 이들의 변화 직물 등을 구분하는 국제·국내 기준이나 체계 조사(사진, 그림 또는 샘플 포함)

- 각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 별첨 5 참조

[자유 주제]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리서치 심사·평가 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리서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5 형식 및 분량

A4 용지 15매 내외 서술식 보고서 (小논문, 연구보고서 형식도 가능)

별첨 작성 요령을 참고(☞ 별첨 6 참조)하되, 자유 형식 가능

※ A4 용지 1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본문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은 5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필요시 해당 리서치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참가 신청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를 통해 제출 (별첨 1 참조)

참가 신청 기간 : 2024.4.8(월) - 5.20.(월)

※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제출)가 가능하나 자료제공, 자문 등 리서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세평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장현주 주무관
☎ 042-714-7549 / wlals0430@korea.kr
-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문승용, 전경원 주무관
☎ 042-714-7534, 7528 / yong7377@korea.kr, kyeongone@korea.kr

7 리서치 제출

제출 기한 : 공고일부터 **9.30.(금)** 까지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8 검증 및 심사

검증

- 표절, 도용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 15% 초과 시 세부 조사 후 적합여부 판정
- 연구 부정행위 확인 시 응모 무효 처리

심사

- [심사기준] ① 주제의 창의성·적절성 ② 내용의 논리성·일관성 ③ 방법의 타당성·적절성 ④ 결과의 활용성·기여도
- [심사위원] 관세청 공무원, 교수, 전문직 등 관련 전문가 6인 내외
- [심사방법]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서면 평가
 - (가점) 권고주제 선택에 대해 평가점수 5% 범위 내 적용 가능

9 시상 및 우수작 발표회

● 시상 내역

- 대 상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최우수상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우 수 상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80만원
- 장 려 상 (5)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작 발표 : 2024.11월 공모전 홈페이지(www.ganseoyoungomjeon.kr)

※ 지연 등 변경 시 공모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우수작 발표회 : 추후 공지(별도 통보 예정)

10 기타 사항

● 연구윤리서약서(☞ 별첨 2)와 리서치 활용 동의서(☞ 별첨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첨 4)를 제출하여야 함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 제출된 리서치 보고서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리서치를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된 리서치와 유사한 리서치 보고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모전에 제출된 리서치가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 리서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준용

●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리서치 보고서는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받을 것을 권장함(다만, 학위논문으로 제출 및 활용할 수 없음)

별첨 1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 참가신청서

대표자

성명	홍길동	소속 및 직위	관세대학교 000학과		
부문	관세평가/ 품목분류 택 1	연락처	010-1234-5673	이메일	000000@ customs.go.kr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mmm아파트 000동 0000동				
리서치주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소송 사례 수집 및 분석				
연구방안	연구개요 작성				

팀원

성명①	김길동	소속	관세대학교		
전공	000학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성명②	박길동	소속	관세대학교		
전공	000학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연구 윤리 서약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4년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사전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상작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귀원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수상자격 박탈, 상금반환 등 수상 취소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 . .

○ 소속 :

○ 직위 :

○ 성명 :

(서명)

리서치(보고서) 활용 동의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4년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제출된 리서치가 관세청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 편집 및 제도에 반영되는 것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24.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관하는「2024년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참가신청서 상의 개인정보를 상기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항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전공, 주소	공모전 운영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전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제3자 제공 항목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이용 기간
우수작채자 인쇄업체	성명, 소속	책자 발간	3개월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전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리서치 권고주제 세부내용

[관세평가 부문]

주제 1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소싱 사례 수집 및 분석

[리서치 목적 및 방향]

- 다국적 기업은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기획, 설계, 원재료 및 부품조달, 조립 및 가공, 포장, 유통, 판매에 이르기 까지 세분화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를 거칠 때 마다 제품의 부가가치가 추가됨. 이와 같이 제품의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가리켜 ‘가치사슬(Value Chain)이라고 함
-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은 제품생산의 과정이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형성되는 국제적인 분업체계를 가리키며, 현재는 전 업종에서 자사의 핵심 역량을 전략분야에 집중시키며 동시에 원재료나 부품, 제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까지 세계 각처에서 싸고 신속하게 조달하는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이 이루어짐
 - * 다국적기업은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세계화와 현지화의 일환으로 글로벌 소싱 확대(나이키社: 제품생산(협력업체)/기술개발&유통·마케팅에 집중, 애플社: 제품생산 외부 아웃소싱/ 신기술 R&D도 협업)
- 글로벌 소싱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해외법인)뿐만 아니라 非특수관계자간에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비용이 다양한 명목으로 공급자에게 지불되고 있음**

[리서치 내용]

- 각 산업별*로 고유한 무역거래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기능 분화 사례 수집 및 유형화**
 - * 산업구분 : IT등 빅테크, 의약품, 명품(잡화), 스포츠브랜드, 프랜차이즈, 다단계 등
- 권리사용료·국제마케팅비용·구매수수료·경영지원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무형자산 이용 대가의 성격을 관세평가관점에서 분석 및 모델화**
- 특정 산업(업종)을 리서치 주제로 국한(선택)하여 심층 조사하되 **관세평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리서치 목적 및 방향】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WTO관세평가협정은 제1조에서 거래가격의 적용의 원칙을 규정)
 - 다만,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①구매자의 물품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이나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②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③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는 사후귀속 이익, ④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거래의 성립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거래가격 ‘채택요건’ 또는 ‘배제요건’ 이라 함, 관세법 제 30조 제3항 각 호)
-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수출판매 해당여부와 함께 상기의 배제요건이 가격이나 거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물품의 특성, 산업분야의 특징과 상업적 관행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특히, 반도체*, 제약, 의료기기**, 에너지(원유, 리튬 등 광물) 등 산업이나 원재료(물품)의 특성에 따라 가격의 결정, 물품의 공급, 수입 후 판매·유통, 대금의 지급까지 계약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관행이 존재함
 - * 반도체 업계의 Ship & Debit거래(수입물품 판매후 Price List상의 가격과 견적가격의 차액을 판매자로부터 환급받는 방식)
 - ** 고가의 장비를 임대 또는 저가로 공급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비용으로 수익창출
- 특정 산업별로 특수성이나 관세평가 상 시사점이 있는 국제거래 방식을 조사하여 관세평가 업무 전반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리서치 내용】

- 운송·의료·철강·에너지 등 산업의 특이성, 물품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국제거래(계약·공급·유통·대금지급 등) 사례수집 및 상관행 조사
- 다양한 국제거래 행태에 대하여 상관행을 인정(부정)하여 거래가격을 적용(또는 배제)한 국내외 유권해석 사례 수집 및 분석

【리서치 목적 및 방향】

- 키워드(Key word)란 검색이나 광고, 내용 요약,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사용하는 핵심단어를 말함
 - 최근에는 광고나 마케팅, 주식시장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성향이나 수요(needs), 시장의 흐름·트렌드를 파악하고 핵심 이슈를 도출하기 위하여 키워드 분석을 활용하고 있음
- 특히, 관세·회계·물류·유통 분야에서의 제품 기획, 연구개발, 국제거래와 관련 이슈 또는 키워드는 무역거래 유형을 분류하고 국제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임

【리서치 내용】

- 제조·물류·유통·IT 등 각 업종 별로 구분 또는 특성 산업(업종)에 국한하여 제품 기획·연구 개발·국제거래와 관련 이슈 또는 키워드 분석 및 해설
 - * 예시) 의약품 신약개발 시 CMO, CDO, CRO, CDMO, 마일스톤, 파이프라인 등 생소한 단어 사용
 - ** 무역실무 전반, 운송(선박·항공), 포워드(운송주선), 관세사(신고), 창고(보관업), 포장 등
 - 아울러, 관세평가 관점에서 각 Key word와 관련된 회계용어 연계도 가능
 -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관점에서 연계
-

【리서치 목적 및 방향】

-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매년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하고 전체 수입건수에서 비중**이 80%이상을 넘어서는 등 전자상거래로 무역구조가 전환되고 국내의 소비자가 무역거래 당사자가 됨

* 전자상거래 수입건수 : ('20)6,358만건↗ ('21)8,838만건↗ ('22)9,613만건↗ ('23)13,145만건

** 전체 수입건수 중 전자상거래 비중 : ('20) 81%↗ ('21) 85%↗ ('22) 87%↗ ('23) 89%

- 디지털 경제의 고도화에 따라 재화와 용역이 결합되거나 그 구분이 모호한 거래가 등장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초저가 할인, 무료배송 등이 최근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평가 쟁점이 되고 있음

- ①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해외물품 구매 시 수출판매와 판매자·구매자 판단
- ② 종전 구매에 따라 적용된 마일리지 할인(또는 우수고객 할인, 특정카드 할인)
- ③ 물품과 서비스 결합 거래(도서 & 온라인 구독, 유전자검사 키트 & 보고서 등)
- ④ 운임이 무료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이 적용되는 경우
- ⑤ 사은품에 대한 관세평가 방안(Package Deal인지 무상물품 혹은 할인의 문제)
ex) 사은품 증정(구매물품과 다름) 또는 1+1(구매물품과 동일품 제공) 등

※ 디지털 경제시대 전자상거래(E-Commerce)에서는 증강(AR)·가상(VR)현실, 보이스 커머스, 소셜 커머스와 통합 및 AI 기반, 개인화, 구독 모델이 그 핵심임

- 날로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무역형태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전자상거래에 일관되게 적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법 정립 필요

* 관세청은 '24 하반기「전자상거래 전용수입통관 플랫폼」구축하여 전자상거래전용수입신고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전용포털·모바일 앱, 개인인증제 도입 예정

【리서치 내용】

- 전자상거래(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주요 관세평가 쟁점 사례 수집 및 분석

* 상기 언급 사례에 국한되지 않으며 더 많은 사례수집 필요(최소 2가지 이상 사례 분석)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유형과 관세평가 이슈 분석(유형재+디지털재화·서비스 거래 등)
- 해외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 사례 연구
- 쟁점 사례별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법 정립

【리서치 목적 및 방향】

-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CIF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법 제 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WCO 예해 21.1(운송비 : FOB 평가제도)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수입항 또는 수입 장소까지의 수입물품 운송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할지 또는 제외할지 규정할 수 있음
- 이에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동 운송비용을 제외하는 FOB 방식을 채택함
-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FOB 방식을 채택한 국가로 수출하는 것이 CIF 방식을 채택한 국가로 수출하는 것보다 운송 관련 비용만큼 관·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한 감소함
 - 또한 ICC에서 제정한 인코텀즈(2020)의 11개 거래계약 조건에 따라 운임·보험료 등의 가산·공제여부 판단하여야 함
- 수입 시 발생하는 세액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해당 세액을 누가 부담할지 거래조건을 합의하고, 수출자가 해당 세액을 고려하여 물품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음(국가별 CIF/FOB 평가체제와 Incoterms 거래조건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모델 제시 - 예시 수록)

【리서치 내용】

- 동일 물품을 동일 조건으로 수출입 시 주요 국별 과세가격 및 관부가세 책정
 - ※ 관련기관(관세청·무역협회 등)의 무역통계를 기초로 상위 수출입품목 선정 후 국가별 운임 평가 방식,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세액산정 예시 작성
- 주요국의 관세 관련 법령 조사(관세평가 관련 부분 중심으로)
-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운송 관련 비용의 주요국 판결 사례 수집

【기타】

- 수출입 기업에 Incoterms 거래조건 및 물품 가격 책정 등 인보이스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음
- 국가별·물품별 FTA 적용과 연계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함

【리서치 목적 및 방향】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함
 - 구매자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권리사용료, Royalties & Licence Fees)이 실제지급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가산하여야 함
 - 다만, 이러한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판매조건으로 지급)**을 충족하여야 함
- 불복 및 쟁송과정에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관점 상이)이 빈번히 발생
 - 무형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하기 때문에 원가과약 불가 등의 사유로 그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위탁생산·임가공 등 형태로 제조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고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제3자(라이선서)에게 지급하는 경우 거래 조건성 여부
 - 수입물품과 관련성·거래 조건성을 충족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그 구분 및 계산의 문제
 -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와 국내 공정관리 및 사업운영 노하우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포함된 경우 그 구분 및 계산의 문제

【리서치 내용】

*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

- 권리사용료 가산(비가산)여부에 대한 다양한 사례 수집 및 시사점 분석
- 허여되는 ‘권리’의 종류에 따른 권리사용료 가산 사례 및 기준 연구
- 해외 사례 및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에 대한 **판단 기준 연구**

[품목분류 부문]

주제 1 원유와 석탄의 가공단계별 생산품의 종류 및 상세설명(사진, 그림 포함)

【리서치 목적】

- 관세율표 제27류는 광물성 연료인 석탄과 석유를 기본 재료로 가공단계별 생산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가공단계별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면 생산품의 종류를 알 수 있어 품목분류를 쉽게 접근할 것으로 판단됨

【리서치 내용】

- 석탄과 원유가 만들어지는 과정 및 특성
- 코크스, 콜타르, 피치가 만들어지는 과정 및 특성
- 원유 증류탑의 단계별 생산품과 그 특성
- 석탄과 원유의 가공단계와 제27류 각 호의 연계

【활 용】

- 석유 및 석탄 제품의 품목분류에 활용
-

【리서치 목적】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범용성 부분품의 경우 제16부, 제17부, 제91, 92, 93, 94, 95, 96류에서 제외하고 있기에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구분하는 것이 품목분류에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임.

【리서치 내용】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한 종류 및 사진 자료 조사
 - 제7307호(철강제의 관연결구류), 제7312호(철강제의 로프 등), 제7315호(철강제의 체인), 제7317호(철강제의 못·압정 등), 제7318호(철강제의 볼트 등)의 종류
 -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의 종류
 - 제8301호(비금속의 자물쇠와 열쇠), 제8302호(장착구와 부착구), 제8308호(비금속제의 버클·훅 등), 제8310호(비금속제의 명판과 사인판 등), 제830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의 종류

【활 용】

- 제15부에 기재된 범용성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의 종류를 명확히 알고 각 부 또는 류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물품과의 구분기준 마련
-

【리서치 목적】

- 그 밖의 밸브로 분류되는 제8481.80의 경우 전기 작동식, 액압 작동식, 그 밖의 자동제어식 등의 HSK 10단위가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일부 국가의 경우 양허세율 등이 달라짐(과거 간이정액 환급액 등의 차이가 있어 쟁점사항이 되었음.)
- 베어링의 경우 내경에 대한 해석, 직선형 볼베어링 분류 등은 해설서에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이 된 경우가 있음.

【리서치 내용】

- 제8481호로 분류되는 밸브의 소호 및 HSK 호의 용어에 기재된 종류에 대한 조사(사진 및 도식화된 자료 포함)
- 제8482호로 분류되는 베어링의 종류에 대한 조사(볼베어링의 경우 종류에 따른 내경의 측정 방법 및 직선형 볼베어링의 종류에 대한 조사 포함 ('콘 어셈블리'와 '원추형롤러베어링 어셈블리'와 같이 다양한 어셈블리도 포함해서 조사))

【활 용】

- 밸브의 HSK 분류에 대한 기준마련
 - 베어링의 분류에 대한 기준마련
-

【리서치 목적】

- HS 제5208호(면직물 ; Woven fabrics)의 품목분류 체계는 평직물(①), 능직물(②), 평직물이나 능직물이 아닌 기타의 직물(③)로 분류되어 있음
- 직조방법에 따른 직물의 용어의 해설 및 상거래상의 분류체계를 이해하여 품목분류 기준 수립 시 활용

【리서치 내용】

- 면직물 중 직조 방법에 따라 평직, 능직 등으로 구분하는 국내 또는 국제 규격이나 기준 조사 (KS, ISO, 문헌 등)
- 평직, 능직 이외의 다양한 직조 방법에 따라 구분 가능한 직물의 국내·국제 규격이나 기준 조사(KS, ISO, 문헌 등)
- 변화평직(바스켓직, 옥스퍼드직 등), 수자직 등 각종 직물의 직조방법에 대한 연구 서적, 논문 등을 통한 자료 조사

【활 용】

- 면직물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기준 마련 및 사례 축적
 - 상기 ‘기타의 직물(③)’로 분류되는 사례 조사를 통해 품목분류의 정확성 확보
-

리서치 작성 요령

I. 원고 작성 일반요령

1. 원고는 A4용지에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분	위/아래	오른쪽/왼쪽	머리말/꼬리말	제본
여백	각 20mm	각 30mm	각 8.5mm	0mm

2. 원고는 표지, 목차, 본문, 각주, 표 및 그림,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 1) 표지는 원고의 제목(영문 표기), 필자의 이름(영문·한자 표기), 소속, 직책, 연락처(주소·전화번호·메일주소) 등을 기재한다.
- 2) 목차는 I, 1, 1), (1)의 순으로 표기한다.

※ 제목 및 표, 그림 등의 번호전개

구분	전개번호	크기	구분	전개번호	전개번호 위치
장	I	16	표	<표 1>	표 제목 앞, 표 위 가운데
절	1	13	그림	[그림 1]	그림 제목 앞, 그림 위 가운데
항	1)	12	수식	(1)	수식 뒤(우측 끝)
목	(1)	12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글꼴 신명조·글자크기 12포인트·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 글자 크기

구분	크기	비고(표기)	구분	크기	비고(표기)
표지의 제목	16	진하게	부록제목	12	<부록 1>
본문의 소제목	13		수식	12	(1)
본문 내용	12		소속	10	
성명	12		각주	10	1)
요약	12	<요약>	표 속의 글	11	
표제목	12	<표 1>	그림 속의 글	11	
그림제목	12	<그림 1>	부록 속의 글	11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본문 면의 하단에 아래의 출전표시요령, 인터넷 자료인용, 참고문헌 작성 요령 등을 준용하여 간결하게 표시하며, 글꼴 중고딕·글자크기 10포인트·줄간격 130으로 한다.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표 그리기 요령

구 분	선 모양	비 고	구 분	선 모양	비 고
맨 위/맨 아래	————	진한선	내 부	보통선 또는 점선
왼 쪽/오른 쪽		투명선	표두 아래쪽	====	이중 실선

6) 참고 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참고 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3.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는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5.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6.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7. 외국 지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8.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 :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9.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II. 출전 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서명, 저자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구체적인 예
 - 1) 저자 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 홍길동(1996)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 (Moore 1966)
 - 2) 저자 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 (홍길동 1966)
 -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로 표기한다.
예 : (Evans 1979, 56)
 -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 (한배호 외 1991, 35-36)
 - 5) 한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 (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 6) 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月/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 (XX일보 93/04/08, 5)
 -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을 쓴다.
예 : Tilly(forthcoming); ...홍길동(미간); ...Jones(n.d.)
 -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 (XXX연구원 1992)

III. 인터넷 자료 인용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 홍길동.1996.“한국의통상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 1998. 10. 20)
2. 분량이 많아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
예 : 홍길동.1996.“한국의통일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 1998. 10. 20). (1/10 Bar)

IV.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 : 홍길동·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린위진 (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보고서·간행물·서적 등인 경우는 꺾쇠(「 」)로 표시한다.
 -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5. 저자표기
 - 1) 저자 1 인인 경우
예 :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유권자 : 14대 총선의 분석』. 서울 : 믿음사. Tillich, Paul. 1951-63.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예 : 홍길동·허생·홍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 XX연구원.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 외.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6. 학위 논문 표기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7. 편집된 책 속의 글 표기.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예 :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 호박사.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 :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자본주의의 정치』, 261-306. 서울 : 집현연구소.

8.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예 : Bell, Daniel 저·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 개벽사

리서치 작성 예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관련
판례의 유형화 및 시사점 연구

Study on Case Analysis in Customs Valuation on
Transfer Pri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 연구자 >

권종열,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010-1234-5678, aaaa@customs.go.kr

김현정,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010-5678-1234, bbbbbb@customs.go.kr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II. 다국적 기업과 국제이전가격	3
1. 다국적 기업의 정의 및 특징	3
2.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	5
III. 국제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제도와 법리	6
1. 국제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6
2. 관련 법령과 법리	7
IV. 다국적 기업의 국제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판례 분석 및 유형화 등	8
1. 분석대상 판례	8
2. 분석대상 판례의 주요 내용	11
3. 판례 분석 및 유형화	11
4. 시사점	18
5. 제도개선 방안	20
V. 결론	22
1. 요약 및 의의	2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4
참고문헌	25
연구요약	27
부록 : 특수관계 관세평가 관련 판결의 요지	29

※ 해당 리서치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 필수 작성 · 제출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국제무역은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독립적인 수출자와 수입자의 매매거래에 대한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전통적 무역거래에서,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조직을 구축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 형태를 띠고 이들 간에 의하여 성립되는 다국적기업의 무역거래로 변모되고 있다.¹⁾

다국적기업은 국경과 국적을 초월하여 2개국 이상에서 모회사와 자회사를 설립하여 생산, 판매, 무역, 유통, 서비스, 연구개발 등 경제활동을 하는 초국적 경제 조직체로서 최근에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 또한 증가하게 되었는데, 전체 국제교역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30조 달러 이상으로 이는 총 GDP의 약 50%에 해당 하는 수치로 국제교역에서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통적인 국제무역 패러다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국제무역의 트렌드 변화는 과세관청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 누락에 대해 누락 세액을 징수한 실적을 봐도 알 수가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업체 중 다국적 기업의 비중은 3.9% 수준이지만, 수입액 비중은 36%로 이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업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비중이 작은 편이지만 전체 거래금액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³⁾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관세탈루도 전체 기업 중 38%에 이르는 다국적기업이 탈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국내기업보다 탈세 규모면에서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⁴⁾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적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내부거래자간 특성, 산업구조, 시장점유율, 지분비율, 현지 조세 등을 고려해 자원배분에 최적화된 이전가격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독립 지위에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결정된 가격이 시장원리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으로 확정됨에 반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은 조세회피, 시장침투, 경영확대 등 다국적기업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확정된다.⁵⁾ 또한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가격은 독립 당사자간의

1) 이용수,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관한 효과적 관세평가방법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1면

2) 이용수, 앞의 논문, 1면

3) 김현정,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관세청 국외훈련결과보고서, 2018., 7면

4) 인터넷신문 뉴스락(www.newslock.co.kr), “관세청, 다국적기업 672곳 5년간 관세 탈루 9500억”, 2019. 10. 11.

5) 딜로이트 덕진관세법인, “글로벌기업의 무역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효과적 관세평가방안 연구”, 관세청 연구

매매거래에 따른 합의에 의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나, 다국적기업 거래에서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최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정한 일종의 내부거래 가격으로서 각국의 세제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이전가격의 최대 목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 수입물품의 가격, 즉 관세의 과세가격을 임의적으로 신고하는 등 이전가격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반대로 관세당국은 과세가격을 자의적으로 책정하여 저가 신고하지 않았는가를 보고 있다.

한편 현행 WTO 관세평가협정⁶⁾과 관세법은 다국적기업의 국제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총칭하여 규율하고 있다.⁷⁾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은 가격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그 판단이 매우 어렵고, 또한 실제 법원 등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⁸⁾ 또한 특수관계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기업별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제각각이고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례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제도와 법리를 고찰하고 다년간의 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법원이 어떤 이유로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였거나 불인정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현행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사안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제도에 대해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법원의 판결에서 어떤 이유로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였거나 불인정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판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용역 보고서, 2012., 33면

6) 정식 명칭은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며, 1994. 12. 16.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5. 1. 1.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부속서 1가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신영호,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BEPS)에 대한 관세평가 대응방안”, 고려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34면 ; 이동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의 과세방법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3권 제1호, 2002., 54~55면,

8) 박영기, 「관세평가법」, 삼일인포마인, 2021., 157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 정책에 대해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제도 및 법리에 대해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와 관련한 관례를 분석하여, 법원이 어떤 이유로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였거나 불인정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하고, 시사점을 살펴본 후 현행 관세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중략>

IV. 다국적 기업의 국제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판례 분석 및 유형화 등

1. 분석대상 판례

본 연구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분석대상으로 한 판례는 아래 표1과 같다.

최근 특수관계자간 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와 관련된 판례가 많아지고 있어 연구자가 확인한 2010년 이후 확정된 특수관계 관세평가와 관련되어 모든 판례를 망라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0년 이전의 관련 판례는 그 내용이 중요하고 시사점이 있는 판례를 위주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표1과 같이 27개 사건에 대한 판결(하급심까지 포함시 총 69건의 판결)을 선정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 표1 〉 분석대상 판례

순번	연도	사건번호	특수관계 영향 여부 ⁹⁾
1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등법원 1998. 2. 12. 선고 96구43371 판결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005 판결 	○
2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5구합308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누3186 판결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303 판결 	×
3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1864 판결 	○
4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행정법원 2009. 9. 25. 선고 2008구합562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누34664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5155 판결 	△ (일부 물품만)
5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구합542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누2982 판결 	×
6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행정법원 2010. 7. 7. 선고 2009구합57351 판결 	○
7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구합134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9누10873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16998 판결 	○
8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구합2025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23915 판결 	×
9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선고 2016구합66421 판결 	○

순번	연도	사건번호	특수관계 영향 여부 ⁹⁾
		• 서울고등법원 2017. 11. 3. 선고 2017누53936 판결	
10	2017	• 부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구합2386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23097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5554 판결	○
11	2018	• 부산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5구합2080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21661 판결 • 대법원 2018. 3. 16. 선고 2017두72782 판결	×
12	2018	• 부산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2093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누20910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8697 판결(○
13	2018	• 인천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4구합316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7누40015 판결	○
14	2019	• 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7875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5. 24. 선고 2018누68621 판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43795 판결	×
15	2019	• 서울행정법원 2018. 9. 7. 선고 2017구합7972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선고 2018누66298 판결	×
16	2020	•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6구합5033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누39514 판결 • 대법원 2020. 3. 26.자 2019두62987 판결	○
17	2020	• 부산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2028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1. 8. 선고 2018누21903 판결 • 대법원 2020. 4. 9.자 2019두62079 판결	○
18	2020	• 부산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2134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누23820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두54128 판결	○
19	2020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구합5477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6누79177 판결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59048 판결	○
20	2020	•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구합2069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누23296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두36939 판결	×
21	2021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655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누75618 판결	○

순번	연도	사건번호	특수관계 영향 여부 ⁹⁾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두54869 판결	
22	2021	• 부산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2153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6누24441 판결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두58281 판결	○
23	2021	•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구합106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17누24837 판결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두57127 판결	○
24	2021	• 부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2447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17누23865 판결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두57110 판결	○
25	2022	• 부산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7구합2442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9누24367 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60441 판결	○
26	2022	• 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7구합7958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19누64978 판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53559 판결	○
27	2022	• 서울행정법원 2021. 1. 29. 선고 2019구합570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누37238 판결 • 대법원 2022. 6. 30.자 선고 2022두38281 판결	○

2. 분석대상 판례의 주요 내용

부록 참조(판결 내용 중 특수관계 영향 관세평가와 관련이 없는 쟁점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였다)

3. 판례 분석 및 유형화

대상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크게 i)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ii)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특수관계 영향과 무관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9) 판결 내용에 따라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미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표시하였고, 특수관계 영향 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등 다른 쟁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진 경우도 있어, 특수관계의 가격 영향 여부와 최종 판결 결과(납세자 승, 납세자 패)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대상 판례에서 법원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요인을 유형화한 결과, 크게 13개 유형이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수입가격 등을 결정한 경우, ② 수입자의 전체 이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수입가격 결정한 경우, ③ 비교가격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④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⑤ 수입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된 경우, ⑥ 수입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된 경우, ⑦ 수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판매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 경우, ⑧ 수입물품 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낮은 경우, ⑨ 수입자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체에 비해 높은 경우, ⑩ 수입가격이 국제조세 조정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조차 따르지 않은 경우, ⑪ 거래 전체의 가격결정 방법도 하나의 간접사실로 고려한 경우, ⑫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무관하게 수입가격을 결정한 경우, ⑬ 기타의 경우로 나뉘었다.

< 표2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

순번	내 용	해당 사건번호
1	판매자의 일방적인 수입가격 등 결정	
	<p>① 판매자의 일방적인 수입가격 결정 (수입자와 수입가격에 대한 협의나 협상한 근거 자료 없음)</p>	<p>서울고법 96구43371 서울고법 2009누34664 서울행법 2009구합57351 서울고법 2017누53936 부산고법2016누23097 부산고법 2017누20910 서울고법 2017누40015 인천지법 2016구합50338 부산고법 2018누21903 부산고법 2016누23820 서울고법 2016누79177 부산고법 2016누24441 부산고법 2017누24837 부산고법 2017누23865 부산지법 2017구합24425 서울고법 2019누64978</p>
	<p>② 판매자가 국내 판매 상황(국내 소비자 판매가격, 할인기간, 가격경쟁력 등)까지 고려하여 수입가격 결정</p>	<p>서울고법 2009누10873 부산고법 2018누21903 서울고법 2016누79177</p>

순번	내 용	해당 사건번호
	<p data-bbox="347 405 1066 488">③ 수입자가 수입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을 하지 못함</p> <p data-bbox="347 633 879 672">④ 해외본사가 수입물품의 공급자 지정</p>	<p data-bbox="1114 253 1414 286">서울고법 2009누34664</p> <p data-bbox="1114 315 1414 577">서울고법 2009누34664 서울고법 2017누53936 부산고법2016누23097 부산고법 2019누24367 서울고법 2021누37238 서울고법 2019누64978</p> <p data-bbox="1129 633 1398 667">서울고법 96구43371</p>
2	<p data-bbox="276 712 1066 795">수입자의 전체 이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수입가격 결정</p> <p data-bbox="347 1021 922 1055">① 수입자의 전체 이익률을 일정하게 유지</p> <p data-bbox="347 1323 1066 1406">② 판매자가 수입자의 경영정보(영업비밀)를 모두 파악</p> <p data-bbox="347 1473 927 1507">③ 판매자가 수입자의 영업외비용까지 보전</p>	<p data-bbox="1114 835 1425 1238">서울고법 2009누10873 서울행법 2009구합57351 서울고법 2016누79177 부산고법 2016누23097 서울고법 2021누37238 서울고법 2017누53936 부산고법 2017누20910 서울고법 2017누40015 서울고법 2016누75618</p> <p data-bbox="1114 1279 1414 1451">서울고법 2009누10873 서울고법 2017누53936 부산고법 2017누20910 부산고법 2016누23820</p> <p data-bbox="1114 1473 1414 1507">서울고법 2009누10873</p>
3	<p data-bbox="276 1529 627 1563">비교가격과의 현저한 차이</p> <p data-bbox="347 1597 1066 1680">① 4방법에 따른 결정되는 과세가격과의 현저한 차이</p> <p data-bbox="347 1771 1066 1854">② 비특수관계자인 국내 다른 수입자의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차이</p> <p data-bbox="347 1944 1066 2027">③ 기타(제4방법에 의한 해당물품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이 될 수 없음)</p>	<p data-bbox="1114 1597 1414 1680">서울고법 96구43371 서울고법 2017누53936</p> <p data-bbox="1114 1704 1430 1921">서울고법 2009누34664 인천지법 2016구합50338 부산고법 2017누24837 부산고법 2017누23865 부산고법 2019누24367</p> <p data-bbox="1114 1966 1414 2000">부산고법 2016누23820</p>

순번	내 용	해당 사건번호
4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① 시스템 전체 가격유지를 위해 수입물품 가격 인하	서울고법 2016누79177
	② 수입자가 스스로 구성한 품목군(바스켓)의 목표이익률을 일정 범위로 유지	서울고법 2016누75618
	③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에게 할인을 차등 적용	부산고법 2017누24837 부산고법 2017누23865
5	수입가격의 급격한 변동	
	① 국내 판매가격(보험약가)이 일정하게 유지	서울고법 2009누34664 서울고법 2017누40015
	② 국내 시장·거래 상황과 무관하게 수입가격 변동	서울고법 2017누53936 부산고법 2016누23097 서울고법 2017누40015 서울고법 2016누79177
	③ 판매자가 정한 목표 영업이익률 실현을 위해 수입가격 변동	서울고법 2017누53936
	④ 기타	부산고법 2017누20910 인천지법 2016구합50338 서울고법 2019누64978
6	수입가격이 일정하게 유지	
	① 국내시장, 개별거래 상황의 변동에도 수입가격이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	부산지법 2008구합1864 부산고법 2016누24441
	② 이익률이 사분위 범위를 크게 벗어남에도 수입가격 조정하지 않음	부산고법 2016누24441 부산고법 2019누24367
7	수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판매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정)	서울고법 2017누40015 인천지법 2016구합50338 서울행법 2015구합54773
8	수입물품 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낮음	
	① 수입물품 가격이 원재료의 수입가격보다 낮음	서울고법 2009누34664
	② 제조원가 이하로 물품을 판매	서울고법 2009누10873

순번	내 용	해당 사건번호
9	수입자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체에 비해 높음	부산고법 2016누23097 부산고법 2018누21903 부산고법 2019누24367
10	수입가격이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조차 따르지 않음	서울고법 2009누10873 부산고법 2017누20910 서울고법 2017누40015 부산고법 2018누21903
11	거래 전체의 가격결정 방법도 하나의 간접사실로 고려	서울고법 2017누40015 부산고법 2016누23820 부산고법 2016누24441
12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무관하게 수입가격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하된 FTA 관세율을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음 ② 다른 물품보다 보험약가는 더 높음에도 수입가격이 더 낮음 	서울고법 2021누37238 서울고법 2021누37238
13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자의 전반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이 아님 - 사전 약정없이 물품대금을 추가 지급 - 결제통화의 잦은 변경, 시장환율과 차이나는 고정환율 사용 - 심판청구 단계까지 특수관계 영향을 주장하지 않음 - 판매자가 보증수리 관련 일체 비용을 보전하여, 보증수리용 부품 가격을 낮출 유인이 있음 - 국내시장 상황, 영업손실 등 사유로 수입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인하 	부산고법 2017누20910 인천지법 2016구합50338 부산고법 2016누23820 부산고법 2016누23820 부산고법 2017누24837 부산고법 2016누24441 부산고법 2016누24441

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특수관계 영향과 무관한 요인

분석대상 판례에서 법원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특수관계 영향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요인을 유형화한 결과, 크게 12개 유형이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수입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따랐는지 여부, ② 수입자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체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매출원가율이 동종업체에 비해 낮은) 경우, ③ 거래 특수성 등으로 특별할인가격으

로 수입한 경우, ④ 판매자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한 경우, ⑤ 수입자가 판매자와 가격 협상을 한 경우, ⑥ 환율, 매출, 보험약가 변동을 수입가격(재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⑦ 수입가격을 국내가 아닌 해외의 동종업체 매출총이익률, 해외의 소비자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경우, ⑧ 감소하는 관세보다 증가하는 법인세 부담이 더 크므로 수입가격을 낮출 경제적 요인이 없는 경우, ⑨ 비특수관계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한 경우, ⑩ 판매자가 수입자 영업이익을 보장해준 것이 아닌 경우, ⑪ 수입가격과 생산자가격, 국내시장가격, 동종물품 수입가격 등과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 ⑫ 기타의 경우로 나뉘었다.

< 표3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특수관계 영향과 무관한 요인

순번	내 용	해당 사건번호
1	수입가격이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따랐는지 여부	서울고법 2009누10873 서울고법 2017누53936 부산고법 2017누20910 서울고법 2017누40015 부산고법 2010누2982 부산고법 2018누21903 부산고법 2016누23820 부산고법 2019누23296 서울고법 2016누75618 부산고법 2016누24441 서울고법 2021누37238 서울고법 2019누64978 인천지법 2016구합50338
2	수입자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체에 비해 높거나 비슷함 (매출원가율이 동종업체에 비해 낮음)	대법원 2007두9303 서울고법 2009누34664 부산고법 2010누2982 부산고법 2010누2982 부산고법 2017누21661
3	거래 특수성 등으로 특별할인가격으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개경쟁입찰용으로 특별할인가격으로 수입 (거래의 특수성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 ② 국내 가격경쟁력 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영업이익 증가 등을 위해 특별할인가격으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고법 2015누23915 서울고법 2018누66298 부산고법 2015누23915

<중략>

4. 시사점

다국적 기업의 국제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판례를 분석·유형화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2010년 이후 특수관계 영향 관련 법원의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국제무역이 기존 독립 당사자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그 트렌드가 변화한 결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이와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분석대상 판례는 총 27개 사건에 대한 것으로, 그 중에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사례는 20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는 7건으로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사례가 월등하게 많았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다국적기업은 회사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국의 세제정책상의 차이점을 이용하는 등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여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에서는 공개시장 가격과 다른 왜곡된 가격이 많이 사용되어 소위 ‘이전가격 조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해 왔는데, 분석대상 판례에서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사례가 월등하게 많았다는 점을 볼 때 이와 같은 일반적인 견해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분석대상 판례 중 여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요인들이 있어 이는 향후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참고문헌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 전자학습(e-Learning) 모듈」, 2011.
-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 김현정,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관세청 국외훈련결과보고서, 2018.
- 노근홍,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관세분야의 대응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딜로이트 덕진관세법인, “글로벌기업의 무역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효과적 관세평가방안 연구”, 관세청 연구용역 보고서, 2012.
- 박영기, 「관세평가법」, 삼일인포마인, 2021.
- 신민호, “이전가격의 관세평가 검증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신영호,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BEPS)에 대한 관세평가 대응방안”, 고려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이동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의 과세방법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3권 제1호, 2002.
- 이용수,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관한 효과적 관세평가방법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인터넷신문 뉴스락(www.newslock.co.kr), “관세청, 다국적기업 672곳 5년간 관세 탈루 9500억”, 2019. 10. 11.
- 최천식,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전략에 대응한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관련 판례의 유형화 및 시사점 연구(요약)

최근 국제무역은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독립적인 수출자와 수입자의 매매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 형태를 띠고 이들 간에 의하여 성립되는 다국적기업의 무역거래로 변모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적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최적화된 이전가격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공개시장가격과 다른 왜곡된 가격이 많이 사용되어 이를 ‘이전가격 조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행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은 다국적기업의 국제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총칭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그 판단은 매우 어렵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확정된 특수관계 관세평가와 관련된 거의 모든 판례와 2010년 이전의 주요한 판례 등 총 27개 사건(하급심까지 포함시 총 69건의 판결)을 선정하여 이를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요인’과 ‘법원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특수관계 영향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법원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요인은 크게 13개 유형이 나타나고, 법원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특수관계 영향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요인은 크게 12개 유형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국적 기업의 국제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판례를 분석·유형화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었다. 첫째, 2010년 이후 특수관계 영향 관련 법원의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국제무역이 기존 독립 당사자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그 트렌드가 변화한 결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이와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사례가 월등하게 많았다는 점을 볼 때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셋째, 분석 대상 판례 중 여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요인들이 있어 이는 향후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거래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1~2개의 유형만을 기준으로 바로 특수관계 영향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수개의 유형을 종합하여 특수관계 영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대상판례를 분석·유형화하여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평가고시에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례와 미치지 않은 사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근 다국적 기업의 국제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와 관련된 최근 10여년 동안의 거의 모든 판례를 분석하여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등의 요인을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유형화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참고할 경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동안에 겪어왔던 어려움과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분석대상 판례는 27개 사건에 대한 것으로 그 수가 적어, 그 유형화한 내용을 그대로 일반화하기는 곤란하였고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시 적용되는 일률적인 사례를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또한 법원의 판결보다 더 많은 사례가 누적되어 있는 조세심판원 등의 재결례는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을 모니터링을 하여 법원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며, 다국적 기업의 국제이전가격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관세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등 재결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관세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부록 : 특수관계 관세평가 관련 판결의 요지 〉

① 서울고등법원 1998. 2. 12. 선고 96구43371 판결(원고 패),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005 판결(상고 기각)

(2심 판결 요지)

한국주주와 미국본사 사이에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에서는 미국본사 등이 원고에게 공급할 원료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할 구입가격은 미국본사와 한국주주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이 구입가격이 한 번 결정되면 동 구입가격을 변동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매번 거래마다 미국본사가 구입가격에 관하여 한국주주와 재차 일일이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미국본사 사이에 체결된 ‘기술원조 및 제조판매계약’에서는 원고는 특정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품과 자재를 미국본사가 추천하는 공급원으로부터 미국본사가 권고하는 조건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원고는 그 제조원료를 미국본사나 미국본사가 지정하는 공급원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며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미국본사 사이의 원료구매에 관한 실제 의사결정은 한국주주로부터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한국 대표이사와 미국주주로부터 유사한 위임을 받은 미국 대표이사간의 구두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져왔다.

이 사건 수입물품의 가격과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한 가격과의 차액의 수입가격에 대한 비율은 〇〇%에서 〇〇%에 이르고 있다.

관세평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가격정책상 어떤 품목은 저가나 고가로 공급하고, 또 어떤 품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특수관계가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는 가격에 영향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심 판결 요지)

<이하 생략>